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84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10.

발 의 자 : 민형배·주철현·이개호
박지원·최혁진·조계원
양부남·위성곤·김용민
소병훈·김문수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토론식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대화와 타협의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.

현행법에서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기본사항을 정합니다.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으로 운영합니다.

민주시민을 육성하는 현대 공교육에서 토의·토론 능력은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입니다. 아직 현행법에 토의·토론 교육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.

토의·토론을 통해 학습할 경우 학생이 단순 암기에서 벗어나 교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이를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비판하고, 종합하고, 평가하게 되어 사고력 또한 커집니다.

이에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토론식 수업 활용을 명문화하려 합니다.

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능력인 대화와 타협의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(안 제23조제2항 신설 및 제60조의3제1항).

법률 제 호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초·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학교는 학생에게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합리적 사고능력 및 대화와 타협의 태도를 함양시키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토론식 수업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.

제60조의3제1항 중 “제23조제2항·제3항”을 “제23조제3항·제4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3조(교육과정 등) ① (생략)	제23조(교육과정 등) ①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② 학교는 학생에게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합리적 사고능력 및 대화와 타협의 태도를 함양시키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토론식 수업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.</u>
<u>② ~ ④</u> (생략)	<u>③ ~ ⑤</u> (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)
제60조의3(대안학교)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,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·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(이하 “대안학교”라 한다)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, <u>제23조제2항·제3항</u> ,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,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	제60조의3(대안학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제23조제3항·제4항</u> ----- ----- -----

용하지 아니한다.

② · ③ (생 략)

-----.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